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구성) 제1항 제2호중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하고 "식산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조례명 :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 포상조례

현 행	개 정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은 14인 이내로 한다.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은 14인 이내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연직 위원은 농림국장, 식산국장, 지역경제국장, 농촌진흥원시험국장, 농협도지회장, 축협도지회장, 충북원예협동조합장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농촌진흥원시험국장, 농협도지회장, 축협도지회장, 충북원예협동조합장이 된다.

제1장 농어촌개발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 〔1990. 9. 21 조례 제180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 공무원, 각급단체 임직원 및 기관·단체 연구팀을 대상으로 한다.

1. 소득작목을 연구 개발한 자.
2. 농·수·축·임산업 기술을 연구 개발한 자.
3. 작형을 연구 개발한 자.
4. 농·수·축·임산물 저장, 가공기술을 연구 개발한 자.
5. 농·수·축·임산물 유통구조를 창안한 자.

제 3조 (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학교장 및 기타 기관·단체의장이나 주민 20명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포상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에 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은 14인 이내로 한다.

1.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농림국장, 식산국장, 지역경제국장,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농협도지회장, 축협도지회장, 충북원예협동조합장이 된다.
3. 위촉위원은 학계, 전문가, 농민대표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어촌개발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포상유공자 시상과 동시 자동 해촉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